

# 구직(D-10)

<b>활동범위 및 해당자</b>	<p><b>1. 활동범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일반구직, D-10-1 / 최우수인재, D-10-T) 국내 기업·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</li> <li>○ (기술창업준비, D-10-2)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,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,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(인턴활동 제한)</li> <li>○ (첨단기술인턴, D-10-3)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(기관)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</li> </ul> <p><b>2. 해당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수(E-1) · 회화지도(E-2) · 연구(E-3) · 기술지도(E-4) · 전문직업(E-5) · 예술홍행(E-6)*·특정활동(E-7)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, 예술홍행(E-6) 자격 중 유통업소 등의 홍행활동(E-6-2)은 제외하고,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, E-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○ 기업투자(D-8) 자격 ‘다’목*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(기술창업이민자)</li> </ul> </li> <li>○ 해외 우수 대학*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(석사 이상 : 만 35세)로,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(기관)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, QS 500위 이내 해외 대학(본교만 해당)</li> </ul> </li> <li>○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</li> </ul>
<b>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</b>	<span style="color: #ccc;">■</span> 1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아래 대상자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(D-10-1) ①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, ②구직비자 점수제 60점이상 ~ 80점 미만인 자, ③전문직종(E-1~E-7) 근무 경력자, ④주한 외국공관 인턴 직원</li> </ul> </li> </ul>

	<p>·(D-10-2) ①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(OASIS) 중 1개 이상 과정 이수자(참여 중인자 포함), ②창업이민 점수제 ‘필수항목’ 중 1개 이상 해당자</p>															
<b>세부약호</b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cccccc;">약 호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cccccc;">세부 체류자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cccccc;">참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D-10-1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구직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18. 10월 점수제 전환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D-10-2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술창업준비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14. 4. 신설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D-10-3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첨단기술인턴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22. 8. 신설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D-10-T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최우수인재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25. 4. 신설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약 호	세부 체류자격	참 고	D-10-1	일반구직	'18. 10월 점수제 전환	D-10-2	기술창업준비	'14. 4. 신설	D-10-3	첨단기술인턴	'22. 8. 신설	D-10-T	최우수인재	'25. 4. 신설
약 호	세부 체류자격	참 고														
D-10-1	일반구직	'18. 10월 점수제 전환														
D-10-2	기술창업준비	'14. 4. 신설														
D-10-3	첨단기술인턴	'22. 8. 신설														
D-10-T	최우수인재	'25. 4. 신설														
<b>발급 요건</b>	<p>가. 신청대상</p> <p><b>1-1) 일반 구직(D-10-1): 점수제 적용 대상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점수제 적용 대상자) 학사(국내 전문학사 포함)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</li> </ul> <p><b>1-2) 일반 구직(D-10-1): 점수제 면제 특례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 자격 변경) ①국내 대학에서 ②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(D-2)으로 졸업하여 학위 취득한 후, ③최초 구직(D-10-1)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 미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최초 구직(D-10-1) 체류기간 1년 부여,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</li> <li>※ 유학(D-2)에서 구직(D-10)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,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(D-10) 사증을 받는 경우도 점수제 면제 대상에 포함(단, 과거 구직(D-10)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 적용)</li> </ul> </li> <li>○ (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) 국내 정규 대학*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,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(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포함) 또는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한국어 우수자는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 가능하며, 학위 수여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(유망인재)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①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평가(THE 또는 QS)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②한국학 관련 전공 한국어능력 최우수자(토픽 6급)</li> <li>○ (전문직종 근무 경력자) 체류자격변경허가만 가능(사증발급 대상아님)</li> <li>○ (주한 외국공관 근무 인턴)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인턴 직원</li> </ul>															

## 2) 기술창업준비(D-10-2)

○ 학사(국내 전문학사)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,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대한민국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사람
- \* 출원 중인 경우 ‘출원사실증명원’의 심사청구유무란 ‘Y’로 기재된 경우 대상
- 법무부·중기부가 공동 지정한 ‘글로벌 창업이민센터’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(OASIS)의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,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실이 있는 사람
- 중기부 주관 ‘K-Startup 그랜드챌린지’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
- 해외(OECD) 지식재산권 보유자

## 3) 첨단기술인턴(D-10-3)

○ 세계 우수 대학(본교만 해당)\*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(석사 이상의 경우 만 35세) 미만인 자

\* THE 세계대학순위 200위,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

-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(연구전담부서)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
- 「기초연구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
- 국공립 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

## 4) 최우수인재(D-10-T)

○ 최근 5년 이내 아래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취업을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(부처추천 불요)

- 최우수인재(Top-Tier) 자격 기준 중 학력 요건을 갖추었으나, 취업 미확정 시

## 최우수인재 구직(D-10-T) 자격 부여

### 【 세계대학 평가 순위 참고 】

-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
- ②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: Engineering and Technology
- ③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
- ④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
- ⑤ US News &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
- ⑥ US News & World Report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

## 나. 제한대상

### 1) 공통

○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
- ❶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❷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
- ❸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
- ❹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「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」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사람\*

\* (초범) 500만원 이상, (재범)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

### 2) 기술창업준비(D-10-2)

○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기술창업준비(D-10-2)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(단, 교육 재이수 중인 자 제외)

### 3) 첨단기술인턴(D-10-3)

- 초청기업(기관)이 일반구직(D-10-1)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(E계열)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
-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(기관)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
-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(기관)의 국민고용인원\*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

\*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

	<p>뜻하며,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</p> <p><b>4) 최우수인재(D-10-T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내외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②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</li> <li>③ 「출입국관리법」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</li> <li>④ 「출입국관리법」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</li> <li>⑤ 「출입국관리법」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*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미납 등으로 노역장 유치된 경우,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</li> </ul> </li> <li>⑥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「출입국관리법」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(단,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)</li> <li>⑦ 「출입국관리법」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, 「출입국관리법」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</li> <li>⑧ 최근 3년간 「출입국관리법」을 위반하여 1회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,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</li> <li>⑨ 국내법을 위반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나,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,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⑩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·공공복리·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·외국인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</li> </ul> </li> </ul>
<b>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6월의 단수 구직(D-10)사증 발급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직사증에 대한 복수사증발급협정이 체결된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2년, 체류기간 6월의 복수사증 발급</li> </ul> </li> </ul> <p>1. 신청관할</p>

- 자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(제3국)\*에 소재한 한국공관
  - \* 거주 중인 국가라 함은 신청인이 출생 또는 취업 등으로 장기 체류 중인 국가를 의미하며,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제외

## 2. 신청서류

※ 공통 주의 : 해외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후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자국정부(OECD 지재권 입증 서류의 경우 발행국)의 공증 절차를 거쳐 재외공관에 제출

### 1-1) 일반구직(D-10-1) : 점수제 적용 대상자

- 공통서류(신청서, 사진, 여권 사본, 수수료, 신분증 사본)
- 구직활동 계획서
- 학위증(졸업증명서,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)
  - ※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(유학생정보시스템)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
- 대학 순위 소명자료(세계 대학순위 적용 대상자)
- 근무경력 증빙서류(해당자)
  - ※ 근무기간, 장소,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-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(해당자)
  - ※ 연구(연수)기관의 장이 연구주제(연수과정), 연구(연수)기간,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
    - 예) (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) 수료증명서, (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) 연수활동 수료증명서, (교환학생)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
- 한국어능력 입증서류(해당자)
  - ※ 나. 심사 유의사항 – 3. 한국어능력 기준(D-10-1) 참조
- 추천서(해당자)
  - ※ ①(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) 부처(위임기관) 발행 고용추천서\*, ②(재외공관장 추천) 공관 내부추천 문서\*
  - \* (추천서 첨부서류) 학력입증서류, 경력증명서,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등(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)
-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(해당자)
  - ※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
- 체재비 입증서류\*
  - \* '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× 체류개월 수'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
- 기타 점수제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	<p><b>1-2) 일반구직(D-10-1) : 점수제 면제 특례자</b></p> <p>i) <b>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자격 변경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통서류(신청서, 사진, 여권 사본, 수수료, 신분증 사본)</li> <li>○ 구직활동 계획서</li> <li>○ 국내 정규 대학*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(또는 졸업증명서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</li> <li>※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구직자격 변경자로 사증발급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만 인정</li> <li>※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</li> </ul> </li> </ul> <p>ii) <b>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(토픽 4급 상당 이상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통서류(신청서, 사진, 여권 사본, 수수료, 신분증 사본)</li> <li>○ 구직활동 계획서</li> <li>○ 국내 정규 대학*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(또는 졸업증명서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</li> <li>※ 한국어능력 우수자는 졸업일(학위수여일)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하며, 3년이 도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 적용</li> </ul> </li> <li>○ (한국어능력 입증서류)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(81점 이상),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</li> </ul> </li> </ul> <p>iii) <b>유망인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①THE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졸업 ②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6급 소지자</li> <li>○ 공통서류(신청서, 사진, 여권 사본, 수수료, 신분증 사본)</li> <li>○ 구직활동 계획서</li> <li>○ 학위증(졸업증명서,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)</li> <li>○ 최근 3년 이내 THE 또는 QS 세계 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소명자료(해당자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신청일 기준 발표된 최근 3년 이내 자료로 구직(D-10)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적용(체류기간 연장 시 추가 제출 불요)</li> </ul> </li> <li>○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6급 유효 성적표(해당자)</li> <li>※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</li> </ul> <p>iv) <b>주한 공관 근무 인턴 직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통서류(신청서, 사진, 여권 사본, 수수료, 신분증 사본)</li> <li>○ 인턴계약서</li> <li>○ 양국 공관 대사 추천서</li> </ul>
--	--

	<p>※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</p> <p><b>2) 기술창업준비(D-10-2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통서류(신청서, 사진, 여권사본, 수수료, 신분증사본)</li> <li>○ 학사(국내 전문학사) 학위 이상 학력증명서</li> <li>○ 기술창업계획서</li> <li>○ 특허증 · 실용신안등록증 · 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(해당자)</li> <li>○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(해당자)</li> <li>○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(해당자)</li> <li>○ 체재비 입증서류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× 체류개월 수'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3) 최우수인재(D-10-T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통서류(신청서, 표준규격 사진, 여권 사본, 수수료)</li> <li>○ 구직활동 계획서</li> <li>○ 해외 우수대학(본교) 졸업(예정)증명서</li> </ul>
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첨단기술인턴(D-10-3)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만 허용하며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최대 1년의 체류기간 부여 가능 (다만,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)</li> </ol> <p><b>2. 신청서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통서류(신청서, 사진, 여권사본, 수수료, 신분증사본)</li> <li>○ 인턴활동 계획서</li> <li>○ 최근 3년 이내 세계 대학순위 THE 200위, QS 500위 이내 소명자료 및 학위과정(첨단기술분야만 해당)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(학위증)</li> </ul> <p>※ 단, 휴학증명서도 인정하되, 휴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</p> <p>※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(D-2)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절차대로 공적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턴근로계약서</li> </ul> <p>※ 인턴 기업, 인턴활동 분야(첨단기술분야로 제한), 인턴 기간 필수 명시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초청 기업(기관)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, 법인등기부등본, 고용보험가입자명부, 연구시설 현황자료</li> <li>○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(기관)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택1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(연구전담부서)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)</li> <li>② 「기초연구법」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)</li> <li>③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첨단기술기업지정서)</li> <li>④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벤처기업확인서)</li> </ul> </li> <li>○ 체재비 입증서류*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× 체류개월 수'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</li> <li>※ 단, 인턴계약서에 인턴기간 동안 상기 금액 수준의 국내 체재비 지급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</li> </ul> </li> </ul>
--	--